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1나208322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1나20832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가단10965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A

피고, 항소인 E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국도

변론종결 2024. 5. 31.

판결선고 2024. 6. 28.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가단10965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24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합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구리시 F 소재 'G'를 운영하던 H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

나. 위 G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2019. 2. 25. 피고로 변경되었는데, 그 무렵 H은 원고에 대하여 44,240,000원의 주류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9. 3. 1. 원고의 대리인 C 및 H과 만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제공하였고, 그 자리에서 'H은 위 G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하였고, 44,240,000원을 2019. 3. 15.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지불각서에는 연대보증인으로 피고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H은 원고에게 주류대금 채무 44,24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 중 연대보증인란의 피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피고가 기재한 것이 아니며, 인감도장도 본인이 직접 날인하지 아니하였고, H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작성된 것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깨어진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다42226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지불각서에 피고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날인은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된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동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그 자리에서 원고에게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연대보증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지불각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는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연대보증인란의 피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가 피고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필적감정결과나 H이 이 사건 지불각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¹⁾된 사실만으로는 날인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을 깨트리기에 부족하다.

라. 위와 같이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의하면, 피고는 H의 채무 44,240,000원(지급기일: 2019. 3. 15.)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44,2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성철, 판사 김재현, 판사 김천수

1) H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되었으나, 2023. 12. 14.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3고단612), 위 판결은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3노3677)을 거쳐 2024. 5. 3. 그대로확정되었다.